

[별표 21] <개정 2007.9.14>

사고의 통보방법 등(제57조제2항관련)

1. 사고의 종류별 통보의 방법·기한은 다음 표와 같다.

사고의 종류	통 보 방 법	통 보 기 한	
		속 보	상 보
가. 사람이 사망한 사고	전화 또는 모사전송을 이용한 통보(이하 "속보"라 한다) 및 서면으로 제출하는 상세한 통보(이하 "상보"라 한다)	즉 시	사고발생 후 20일 이내
나. 사람이 부상당하거나 중독된 사고	속보 및 상보	즉 시	사고발생 후 10일 이내
다. 가스누출에 의한 폭발 또는 화재사고(가목 및 나목의 경우를 제외한다)	속 보	즉 시	
라. 가스시설이 손괴되거나 가스누출로 인하여 인명대피나 공급중단이 발생한 사고(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경우를 제외한다)	속 보	즉 시	
마. 액화석유가스사업자등의 저장탱크 또는 소형 저장탱크에서 가스가 누출된 사고(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경우를 제외한다)	속 보	즉 시	
비 고 공사가 법 35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고조사를 실시한 때에는 상보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.			

2. 제1호의 사고의 통보시에는 다음 각목의 사항이 통보내용에 포함되어야 한다. 다만, 속보인 경우에는 마목 및 바목의 내용을 생략할 수 있다.

- 가. 통보자의 소속, 직위, 성명 및 연락처
- 나. 사고발생 일시
- 다. 사고발생 장소
- 라. 사고내용
- 마. 시설현황
- 바. 피해현황(인명 및 재산)